

제 1598 호

전라남도보

서기 1984년 3월 19일
발행인
전라남도지사
발행소: 광주시 광산동 13
전라남도문화공보담당관실
우편번호 500

목 차

1. 전라남도 조례 제 1438 호 전라남도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
2. " 고시 제 37 호 여수 제 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
 " " 제 38 호 무안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실시계획인가
 " " 제 39 호 낙시터운영관리세칙고시
3. " 공고 제 76 호 양식어업면허연장허가
 " " 제 77 호 축산물작업장 (도축장) 시설변경허가
 " " 제 79 호 어업면허처분
 " " 제 80 호 사회단체등록취소
- 금 성 시 " 제 12 호 금성도시기본계획

◎ 순간적인 공사망각 두고두고 후회한다.
◎ 당 신 의 행락모습 아들딸이 지켜본다

조례

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전라남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1984 년 3 월 13 일

전라남도지사

전라남도 조례 제 1438 호

전라남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태양열 난방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면제 대상등)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중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집열판을 지붕 위에 설치하고 그 집열판을 통해 집열한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연면적 200 m^2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. 다만, 준공후 2년 이내에 태양열 이용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.

제 3 조 (사무처리의 위임)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,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
제 4 조 (면제 신청)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,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, 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,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, 군수가 이 조례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.

제 5 조 (시행 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례는 1984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.

고 시

전라남도 고시 제 37 호

여수도시계획 제 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고시한다.

관계도서를 여수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4. 3. 10

전 라 남 도 지 사

1. 사 업 명 : 여수 제 3 토지 구획정리사업
2. 시 행 지 구 : 여수시 오림, 문수, 여서, 미평, 둔덕등 각일부
3. 환지계획인가면적 : 623,702 m^2 (188,670 평)
4. 시 행 자 : 여 수 시 장
5. 시 행 기 간 : 83. 2. 2 ~ 85. 12. 31.

첨 부 : 관계도서 각 1 부. 끝.

전라남도 고시 제 38 호

무안도시계획사업 (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, 제 25 조, 26 조
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에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를 군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3. 3. 15

전라남도지사

(실시계획 인가사항)

1. 사업시행지 :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4 - 1 번지선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○ 종류 - 무안도시계획사업
○ 명칭 - 시장
3. 사업규모 { 부지면적 : 11,090.50 m^2
건물면적 : 정기시장 - 40 동 1,456 m^2
상설시장 - 30 동 1,485 m^2
4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: 무안군 무안읍 성동 712 번지
무안군수 김 한 동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{ 착 공 : 1984. 3 허가일로부터
준 공 : 1984. 10.31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: 별 첨
7.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. 도면은 게재 생략 끝.

토 지 세 목 조 서									
(단위 : 평방미터)									
소 재 지			지 번	지 목	제 적	편 입 지 적	소 유 자		이 해 관계인
군	읍 면	리					주 소	성 명	
무안	무안	성남	814-1	답	1,140	208	무안성남 224	이지기	없 음
//	//	//	813-4	//	2,985	1,638	무안성동 712	무안군	//
//	//	//	813-3	//	3,015	2,925	//	//	//
//	//	//	813-2	//	2,985	2,400	//	//	//
//	//	//	813-13	//	2,015	1,518.5	무안성남 351	강수만	//
//	//	//	812-17	//	267	192	무안성동 712	무안군	//
//	//	//	812-16	//	446	304	//	//	//
//	//	//	812-15	//	252	176	//	//	//
//	//	//	812-14	//	708	510	//	//	//
//	//	//	182-13	//	726	500	//	//	//
//	//	//	812-18	//	134	99	//	//	//
//	//	//	812-12	//	196	28	//	//	//
//	//	//	812-19	//	257	30	//	//	//
//	//	//	848	구	//	112	//	국	//
//	//	//	847	//	//	450	//	//	//
계						11,090.5			

전라남도 고시 제 39 호

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8 조 낚시업 허가에 대한 낚시료 기준 및 낚시터 시설규모를 수산청 훈령 제 452 호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사무 취급규정 제 23 조 제 5 항과 수산청 고시 제 13 호 낚시터 운영관리 규정 제 3 조 제 3 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.

1984. 3. 19

전라남도지사

1. 낚시료 기준: 1일 낚시료 및 좌대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낚시료	좌대료	비고
1,000 원 이내	1,500 원 이내	

2. 낚시터의 시설규모: 낚시인의 편의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낚시터 시설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낚시터의 관리사와 낚시인의 휴게소를 겸용할 수 있는 50 m 이상의 건물 또는 간이시설 1개소
- 나. 우물 또는 간이수도전에 의한 급수시설 1개소 이상
- 다. 낚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변소 2개소 이상
- 라. 낚시터 자연보호를 위한 오물처리장 1개소 이상과 200 m 간격 쓰레기통 1개소 이상
- 마. 낚시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선 1척 이상
- 바. 낚시안내판 2개소 이상 (허가받은 후 시설)
- 사. 낚시터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유선방송시설 (10 ha 까지 스피커 시설 1개소 이상, 10 ha 초과시마다 1개소 이상).

끝.

공 고

전남 공고 제 76 호

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.

1984. 3. 17

전 라 남 도 지 사

면허번호	양식물	어업권 주 소	성 명	어장위치	면 적	연장기간	비 고
광양양식 제 18 호	굴, 백 합	여수, 관문 동 464-4	황 종 인 외 1	광양, 골약 중동	320,320	84.5.1 - 94.4.31	10 년
해남양식 제 17 호	고막, 새 고막	해남, 북평 묵동	박현준	북평, 묵동	100,000	84.4.19- 89.4.18	5 년

전라남도 공고 제 77 호

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규정에 의거
허가사항 (시설) 을 일부 변경하였기 동 시행규칙 제 40 조의 규정에 의
하여 공고함.

1984. 3. 17

전 라 남 도 사

1. 작 업 장 명 : 삼원산업특별도축장
2. 소 재 지 :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202
3. 대 표 자 : 김 정 선
4. 시 설 변 경 허가명세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박 피 기 냉 장 설	65.1 m^2	1 대 131.1 m^2	돼지고기 소비 촉진 확대 위생적인 육류 공급

전남 공고 제 79 호

수산업법 제 8 조 제 1 항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.

1984. 3. 19

전 라 남 도 지 사

< 어업면허처분내역 >

면허번호	양식물	어업권자		어장위치	면적	면허기간	비고
		주소	성명				
제 5433 호	새고막	보성, 벌교,	김성수	득량, 예당	10 ha	84.3.19 -	협업
	피조개	벌교 610	외 1			94.3.18	

(부활)

전라남도 공고 제 80 호

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공고함.

1984. 3. 20

전라남도지사 김 창 식

등록번호	등록년월일	단 체 명	대 표 자	소 재 지	취 소 사 유
28	68. 12. 30	전남반공유족회	안 학 선	광주 북구 우 산 554-9	제 8 조 1 항 제 1, 4, 5 호

금성시 공고 제 12 호

금 성 도 시 기 본 계 획

금성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10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84. 2

금 성 시 장 오 시 권

구 분	도 시 명	구 역	면 적 (km ²)	비 고
기 정	나 주	나주군 나주읍 영산포읍 일부지역	26,135	km ² 26,735
		나주군 왕곡면 일부지역	600	
변 경	금 성	금성시 전지역	60,560	km ² 84,460
		나주군 금천면 일부지역	23,720	
		나주군 왕곡면 일부지역	180	

2.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

용도별	기정		변경		비고
	면적 (km ²)	%	면적 (km ²)	%	
주거지역	3,275,000	12.2	6,600,000	7.8	
상업지역	645,000	2.4	836,000	1.0	
공업지역	580,000	2.2	1,700,000	2.0	
자연녹지지역	13,784,000	51.6	59,790,000	70.8	
생산녹지지역	7,616,000	28.5	15,534,000	18.4	
계	26,735,000	100	84,460,000	100	

3. 세부 수립내용

- 도시성격
- 인구계획
- 교통계획
- 산업개발계획
- 공원시설계획
- 재정계획
- 도시지표
- 토지이용계획
- 공공시설계획
- 생활환경계획
- 사회개발계획

4. 관계도서는 본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